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2

- 발주처 및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부산시 산재예방 책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건



순서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사업주 및 종사자 개념 이해
 - 발주처 및 원청 안전보건조치 확보 의무 이해
- 부산시 산재예방 기본계획
 - 지방자치단체 의무
 - 부산시 조례 이행 및 계획
- 지역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제정 이후에도...

법령 정리의 민간위탁 점검 허용, 직업성 질병 급성 중독으로 한정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
1 일시: 2023. 9월 28일(화) 13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제대로 된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 2인 1조, 과로사 예방 적정인력 확보
- 하청, 특수고용 경영책임자 의무 전면 적용
-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준수 부여
-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 광주 붕괴 참사 등 시민재해 적용 확대
- 법령 준수 점검 민간 위탁 금지

중대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 / 장 / 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사)김용균재단/노동건강연대/미참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중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17 민주노총

화학물질 피해
적용대상
예외하지 말라!

17 민주노총



중처법 제정 이후 변화 1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에 따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은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해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

산업 > 기업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준공 연기 "중대재해법 영향"

이재은 기자

입력 2021.03.24 18:09 | 수정 2021.03.24 18:34



국내 마지막 신규 원전 신고리 5·6호기 준공 연기
정부 탈원전 기조에 신한울 3·4호기는 '백지화 수순'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준공을 각각 1년과 9개월씩 연기하기로 했다.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한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리 5호기의 준공 일정은 1년 연장된 2024년 3월31일, 6호기는 9개월 연장된 2025년 3월31일로 미뤄졌다. 지난 1월 말 기준 종합 공정률은 64.7%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현장.

한수원은 일정 조정 이유에 대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핵심 설비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서 시공 일정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은 일정을 현실화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해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라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공사 기간 연장을 시사했다.

F



76m

1

많이 본

1 [공
안

2 [C
자
사

3 중
사
안
자

중처법 제정 이후 변화 2

- 호반건설 등 다수 건설사 : 사주들이 대표이사직 사임,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 롯데 신동빈 회장 : 2020년 롯데쇼핑 등기임원 사임
- 쿠팡 김석범 의장 : 2021년 5월 등기이사 사임
-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 회장직 사퇴, 지주회사 회장 및 그룹회장직은 유지

➔ '준비'라기 보다는 '도망' 수준!!

중대재해법 앞두고 주요 기업들 준비 상황

LG디스플레이



CEO 수준 권한 갖는 최고안전환경책임자 (CSEO) 신설

롯데케미칼



3년간 안전환경 부문에 5,000억 원 투자

포스코



그룹 차원 안전환경본부 신설

삼성물산



부사장급 최고안전책임자(CSO) 선임 및 안전조직 확대

호반건설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선임해 각자대표 체제로

중처법 이후 변화 3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국내 10대 로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팀 현황

로펌	대응팀	규모	구성
김앤장	중대재해 대응 그룹	100여명	변호사, 노동부 출신 등 전관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	60여명	변호사, 노동부 출신 등 전관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 본부	100여명	변호사, 노동부 출신 등 전관
세종	중대재해 대응 센터	30여명	변호사, 노동부 출신 등 전관
율촌	중대재해센터	30여명	변호사, 노동부 출신 등 전관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	40여명	변호사, 노동부 출신 등 전관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	20여명	변호사로만 구성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60여명	변호사, 노동부 출신 등 전관
동인	중대재해팀	25명	변호사로만 구성
지평	산업안전·중대재해팀	26명	변호사, 노동부 출신 등 전관

자료: 각 로펌

인사 2021년 8월 27일(목) 15:00

중, '중대재해 대응센터' 설립

2021-08-25 12:59:44

폰트크기 변경 A A

이행령 분석 세미나 개최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설립하고 기
를 개최하는 등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여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2장 중대산업재해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제3장 중대시민재해

-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제4장 보칙

-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마
지

“법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존 법의 너무 많은 부분이 본질적으로 불만족스럽다는 것이다. 법률의 구조는 형편없고, 연속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시도는 상당한 상술, 상세함, 복잡함으로 귀결되어 심지어 가장 준비된 독자조차 단념하게 만들었다. 법의 적용을 받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언어와 문체로 쓰여 있다. 일선 관리자, 감독관, 생산 현장 직공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심지어 검사국 직원조차도 전부 살펴보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게다가 의회나 공무원도 이 방대하고 상세한 법 전문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과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구식화는 안전법률 조항의 만성 질환이며, 조항이 현대 기술 및 지식에 부합하지 않는 한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 발췌(1970-1972년)

제1장 총칙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3. "중대시민재해"란
4. "공중이용시설"이란
5. "공중교통수단"이란
6. "제조물"이란
7. "종사자"란
8. "사업주"란
9. "경영책임자"란

7항 종사자..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1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6. 선고 2004다29736 판결)

질문) 공무원의 경우는??

나.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 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사자에 포함됨.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이고,
- 직종과 무관하게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 하는 자이기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에 해당함.

* 다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종사자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므로 호기심이나 취미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해당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일반 방문자는 포함하지 않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 보험모집인,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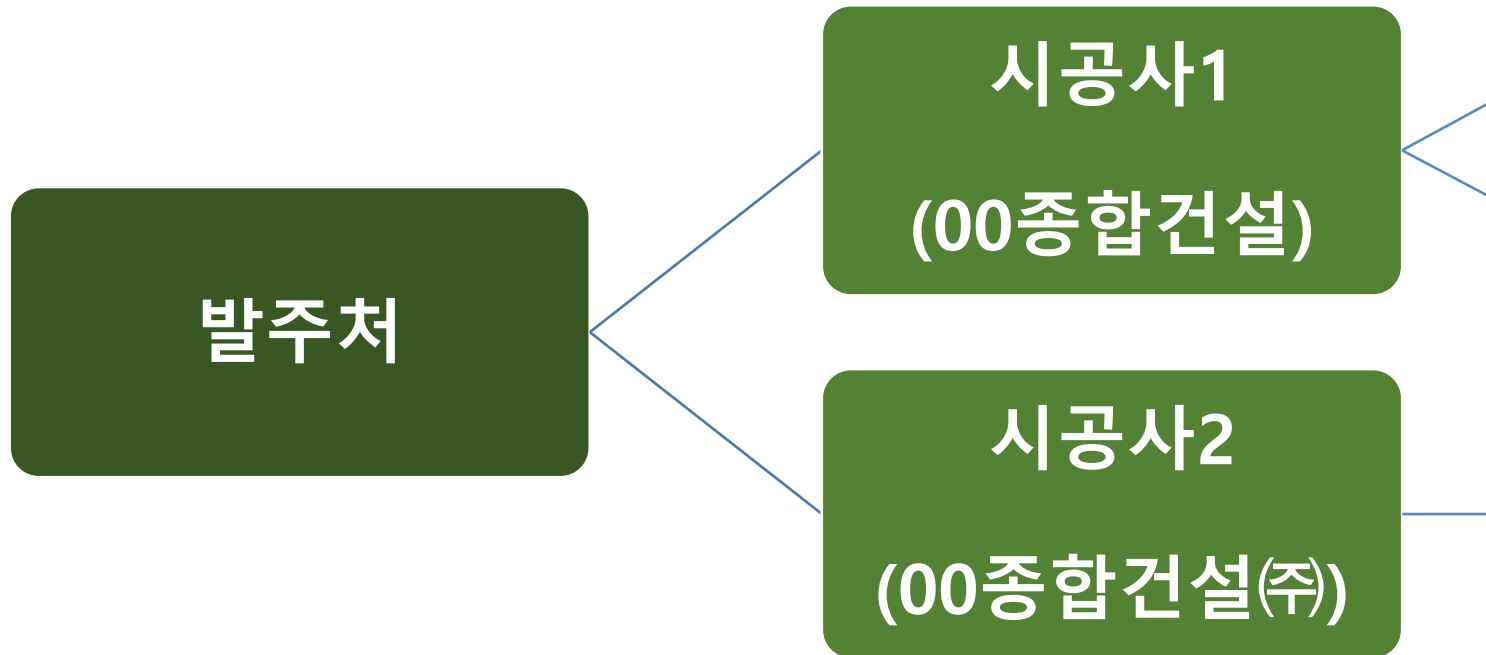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
- 전속성.직종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 원청(본사)에 적용

다.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단계의 수급인,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각 단계의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종사자에 포함됨.
-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모든 수급인 및 수급인의 모든 종사자를 포함함.

예시) 건설현장 발주 및 도급 체계



예시) 부산시 실.국별 발주사업 현황(2021.09)

구분	계	도급	용역	위탁
도시계획국	76	25	51	-
건축주택국	3	-	-	3
교통국	13	3	9	1

구분	시 직접고용				발주(도급.용역.위탁) 사업장				계	사망	부상	질병
	계	사망	부상	질병	계	사망	부상	질병				
도시계획국	2	-	2	-	-	-	-	-	2	-	2	-
문화체육국	4	-	4	-	-	-	-	-	4	-	4	-
녹생환경정책실	10	-	9	1	-	-	-	-	10	-	9	1
소방재난본부	3	-	3	-	-	-	-	-	3	-	3	-
인재개발원	2	-	2	-	-	-	-	-	2	-	2	-
상수도사업본부	4	-	4	-	2	1	1	-	6	1	2	-
건설본부	-	-	-	-	21	4	17	-	21	4	17	-
낙동강관리본부	45	1	44	-	-	-	-	-	45	1	44	-
전 체	70	1	68	1	23	5	18	-	95	27	25	2

건설본부	127	127	-	-
낙동강관리본부	11	7	3	1
소계	691	323	321	47

* 최근 3년간 부산시 실.국별 산재 현황

8항. 사업주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보다는 넓은 개념임.
- 산안법 정의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항 "경영책임자등"이란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으로 규정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부, 처, 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예)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6조까지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학교의 경우

-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 국립대학 총장
 - 개별 법률에 따라 법인을 설립된 국립대학 법인(서울대학교 등) : 총장
 - 그 외 국립 초.중.고등학교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 예시) 국립국악고등학교 : 문화체육관광부 / 부산해사고등학교 : 해양수산부 등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 교육감
-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학교법인의 이사장
- 국립대학 병원 : 국립대학병원 원장

9항 '경영책임자 등'에

- "건설공사 발주자" 이해(노동부 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0.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도록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
 - ➔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인 지배.관리.운영을 하는 자가 아
 - ➔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벌에 의한 도급 제4조 또는

*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이 있다
 * 건설 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

노동안전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 발주처도 유죄

1심 판결서 관계자에 금고 2년 집행유예 2년 등 ... "공기단축 요구해 무리한 공사"

임세웅 입력 2020.12.30 07:30

댓글 0

노동자 38명이 숨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산재 책임이 공사 발주처에게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물류창고 공사 발주처 (주)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시공사인 건우 현장소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감리사 관계자 C씨는 금고 1년8개월, 또 다른 시공사 관계자 D씨는 금고 2년3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운영자 E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시공사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는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화재 가능성을 키웠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이 화재 발생의 직접행위자가 아닌 점, 과실범인 점, 다수 인명피해 발생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해 각 피고인마다 사망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의 역할

- 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 **계획단계** : 건설공사시 중점 유해.위험 요인, 그리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발주자)->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설계자)->설계자의 최종 설계도서 납품 확인(발주자)
 - ➔ 포함내용 :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설계조건이 반영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등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 법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법
종사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신체 보호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의무주체	사업주 (개인사업주+법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하도급 책임범위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건설공사발주자 제외, 다만, 불법 공사기간 단축, 공법변경(1천만원 이하 벌금)	도급, 용역, 위탁 등 시설.장비.장소 등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책임 있는 경우에 한정

도급, 위탁, 용역 등의 경우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조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②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③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 사업주의 보건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70여개 조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p>→ ①·④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p>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시행령 제4조)

- 1)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500명 이상, 산안법상 조직이 3명 이상)
- 3)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반기1회 이상) : 위험성평가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산안법 해당 경우)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 8)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 조치 등
-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가.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 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수준 평가**하여 적절한 수준이 되는 업체와 계약
 -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능력과 기술 평가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 ➔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참여 등 산안법 준수 여부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확인
 - ➔ 평가기준과 절차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수급인 선정되어야 함.

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급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
 - 다양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비용을 책정**하도록 하여야
 - 가급적 항목별-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으로 산정
- ➔ 가급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함..

다.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별도의 독립적인 기간이 아니라 **충분한 작업기간을 고려한 계약기간**
- 특히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 기상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돌발 사태 등을 충분히 고려한 기간에 관한 기준 필요

➔ 실제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체가 선정되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 해당 기준들을 충족하는 수급인과 도급, 용역, 위탁함은 물론 **실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도급, 용역, 위탁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계약 관계도 성립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나 일을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일체를 말하는 것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의미

실질적 책임이란? (노동부 설명자료)

-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통제 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장 뿐 아니라 사업장 밖이라도 사업주가 지정,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 됨
- 수급인이 작업 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 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인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적용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 제5조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원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단, 관련법률을 적시하는 방식은 아님.
 - 정부 여러 자료에서 근로기준법 현재 제외 :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 제5조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벌칙 등 규정		금지·의무규정		(위반) 내용	법정형	비고
제1항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1년 ↓ 10억원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제5조	도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산업안전보건법>

▶ 자연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 자연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가중처벌 규정 있음(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2분의 1까지 가중)

▶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
수준

재해 또는	7년 ↓ 1억원 ↓	
확보 업성 자등		
	각 항의 1/2 가중	
법인 하는	50억원 ↓ 10억원 ↓	면책규정
재해 자등	1년 ↓ 10억원 ↓	
산업 업주	7년 ↓ 1억원 ↓	
법인 하는	50억원 ↓ 10억원 ↓	면책규정

산업안전 보건법 VS 중대재해 처벌법

사망시에만 처벌

적용대상

부상, 질병도 규정할 근거 마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산안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 (전속성, 직종 무관)

사내하청의 원청
사외하청의 원청의 경우
22개 위험작업에 한정

원청범위

사내하청 및 사외하청의 원청
특수고용노동자의 원청

38조 안전조치
39조 보건조치
63조 원청의 의무

의무조항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행정기관 시정
조치 이행

사업주 (법인은 관리자 처벌로 귀결)
사업장 단위 처벌이기 때문에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최대 처벌범위가 되는 한계

처벌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경영책임자
본사의 경영책임자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사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처벌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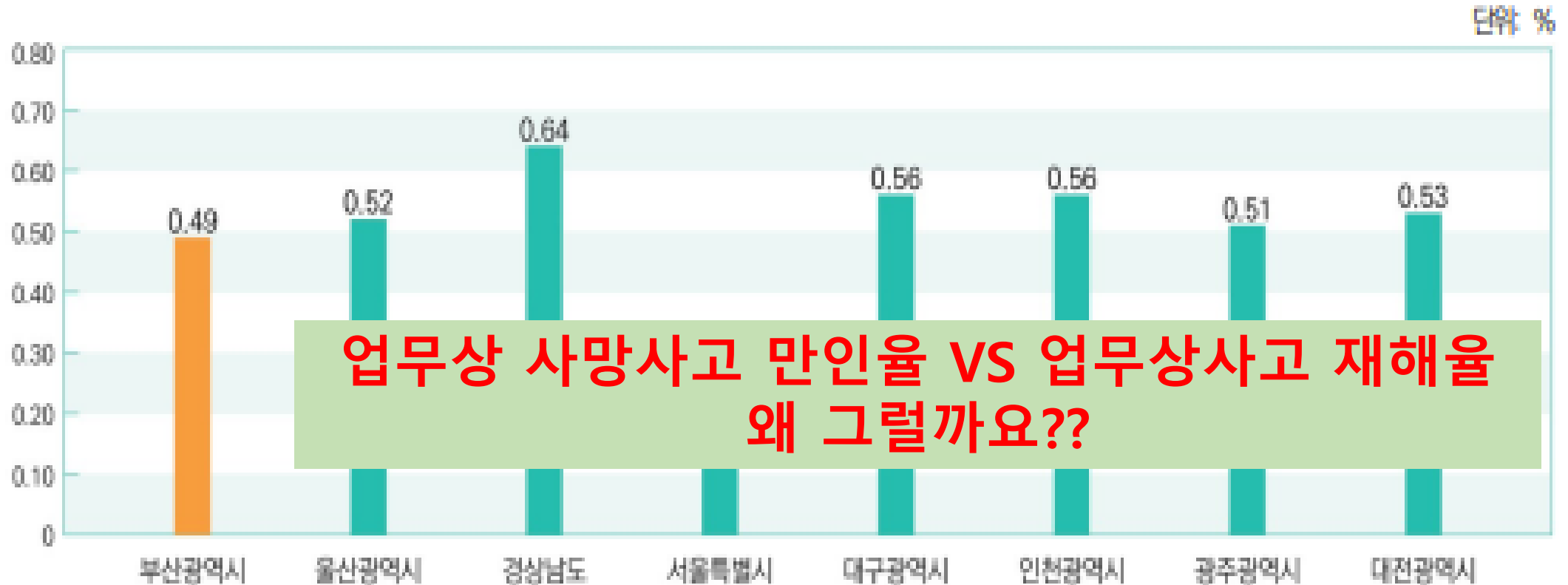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이하)
부상/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법인은 10억 이하)
가중처벌/징벌적손배 5배 이내

지자체의 산재예방/중대재해예방 책무



부산지역 산업재해 발생현황

〈그림 III-104〉 지역별 업무상사고 재해율(2020년)



부산	
울산	
경남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책무(2021년 5월 18일 제정)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이 사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이 수립된 경우 호보 미 아저하 자어하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②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략....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적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시행령)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강)
 - ③ 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지방조례)**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령)

부산시 산재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 조례 제정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5조 책무
- 제6조 사업주의 협조
-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실태조사
- 제9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 제10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 **제11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 제12조 노동자 건강증진 위원회
- 제13조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14조 노동자 건강 증진 관련 실적의 평가 반영
- 제15조 협력체계의 구축

(2020년 5월 제정)

* 광역지자체 단위 12개 지역과 기초지자체 5개 지역 제정함

경남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19년 11월 7일 제정)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도지사의 책무
-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5조 지원대상
- 제6조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 제7조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 제8조 산업재해예방등을 위한 사업
- 제9조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제10조 위원회 구성
- 제11조 위원의 임기
-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 제13조 회의 등
- 제14조 시행규칙

부산시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

- 부산시 산재예방팀 구성 (민생)
 - **인권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
 - 노동권익팀/인권증진팀/**산업기**
- 부산시 산재예방을 위한 기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부산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I

과업개요

1. 과업명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부산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최근 5년간(2017~2021) 부산시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310명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체계 구축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기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부산시의 정책적 지원 필요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1.11.19.)에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신설되어 그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 2021년 5월 18일
- 「부산광역시 산업



지자체의 책무 1 – 적극적인 법규정 해석

- 무엇을 대상으로/기준으로 하나??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 (참고: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의 '노동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 위 조례의 적용범위("부산시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매뉴얼(산안법)에 매몰되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 시대에 맞는 노동행정 요구!!

지자체의 책무 2 – 적극적 행정지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
 - '관계 법령'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건설공사 관련 법령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모든 법령**이 해당된다고 해석해야
 - '시정'뿐 아니라, '개선'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도 포함됨.
 -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실시, 교육 실시 등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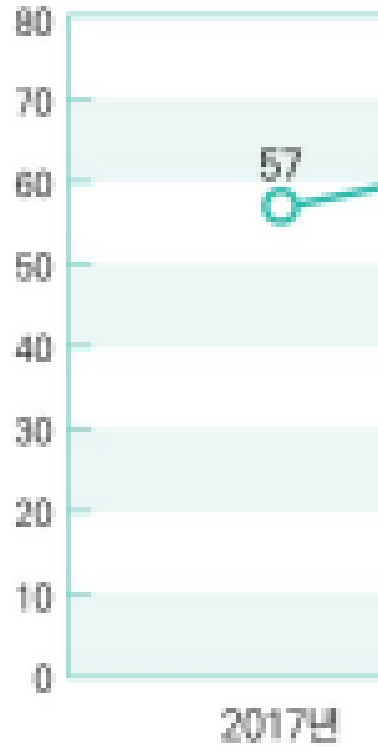
지자체의 책무 3 – 추적관리 및 실태조사 등

-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법 제12조).
- 지자체는 위 조문을 근거로 관할지역 내 발생했던 중대재해의 조사 및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그 결과를 취합해서 추적 관리할 수 있음.
- 특히 반복해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다발하는 사업장 및 동종·유사한 위험업종을 파악해서 실태조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지자체가 각 지역 내지 업종 특성상 위험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명령의 실효성도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중대재해는 사고배경과 원인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고 토론할 때 예방가능**⁴⁹

지자체의 책무 4 -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예방 노력

〈그림 III-106〉 부산지역 업무상사고 사망자 추이(2017-2021년)
단위: 명



〈표 III-41〉 부산지역 사업체 규모별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2020년-2021년 9월)
단위: 명

구분	5인 미만	5인~10인 미만	10인~20인 미만	20인 이상	전체
<p>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후 중대재해 현황</p> <p>* 부산 - 10건 발생 2건에 대한 중처법 적용 (2월 1건, 3월 7건, 4월 2건)</p> <p>* 경남 - 14건 발생 중 8건 중처법 적용</p> <p>* 울산 - 6건 발생 중 1건 중처법 적용</p>					

중대재해처벌법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법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

지역 중대재해 대응 체계 구축!!

[4월 사업 전체 일정표 확인]

4/11(월)	4/12(화)	4/13(수)	4/14(목)	4/15(금)	4/16(토)	4/17(일)
				세월호참사8주 기 행사		
4/18	4/19	4/20	4/21	4/22	4/23	4/24
10:30 경동건 설 기자회견	10:30 부산운 동본부 발족식 & 선전전	1인시위 시작 ▲ 부산지하철 노조	▲ 정의당 부 산시당	▲ 노동인권연 대		
4/25	4/26	4/27	4/28	4/29	4/30	5/1
▲ 부산일반노 조	▲ 가톨릭노동 상담소 13:30 부울경 공동대응	▲ 천주교부산 교구 [1인시위 마무리] 18시 시민 선 전전(서면)	14시 상경투 쟁			

[안내] 2022년 부산지역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기획강좌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부산지역의 현장활동가와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참가비 3만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후원회원 무료)

참가신청 <https://bit.ly/부산중대재해기획강좌>

일정	주제	강사
1강 (3/24 목)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1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안전보건조치의 의미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

공지사항

노동시간센터 2022-4월 월례토론
노동강도 강화하는 알고리즘,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4월 1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 ZOOM)
발표자 : 윤애림 (노동법관리연구소)

2022.04.20(수) 오후 7시
온라인(ZOOM)
발표자 : 윤애림(노동법관리연구소)

신청방법: "노동시간센터월례토론"에서 신청 후 참가비 5000원 입금
(카드, 계좌이체 가능) (문의: 윤애림(노동법관리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노동강도 강화하는 알고리즘,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노동자/시민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알고리즘을 통한 물류창고, 배달/대리운전 영역에서의 노동강도 강화 문제가 이슈입니다. 쿠팡에서는 생산량만 고려한 높은 수준의 시간 당 작업 할당량을 부과하여 노동자들의 작업 속도와 용량을 모니터링하며 압박을 넣는 방식으로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게 사회적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포럼 안내

3월 29일 (토) 14:00 ~ 17:00
3월 30일 (일) 10:00 ~ 13:00

온라인(ZOOM)
발표자 : 윤애림(노동법관리연구소)

신청방법: "노동시간센터월례토론"에서 신청 후 참가비 5000원 입금
(카드, 계좌이체 가능) (문의: 윤애림(노동법관리연구소))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포럼 2022년 3월 29일-30일, 체제전환의 전망과 대안이라는 기후정의운동의 밑그림을 함께 그리는 자리가 열립니다. 자본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반대와 비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체제전환의 전망과 대안이라는 공동의

워킹 기획강좌

1강 3월 24일(목) 7시~9시
2강 3월 29일(목) 7시~9시
3강 4월 5일(목) 7시~9시
4강 4월 12일(목) 7시~9시
5강 4월 19일(목) 7시~9시

신청방법: "노동시간센터월례토론"에서 신청 후 참가비 5000원 입금
(카드, 계좌이체 가능) (문의: 윤애림(노동법관리연구소))

[안내] 2022년 부산지역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기획강좌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부산지역의 현장활동가와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법률인이 중대재해 대응활동을 위해서 알아야 할 관련 법-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활동

건강하게 예술하기

문화예술노동자 건강하게 예술하기: '건강권'

2021년 연구소의 연대활동 중 하나로 문화예술노동연대와 함께

문화예술노동자 건강하게 예술하기: '건강권' 2021년 연구소의 연대활동 중 하나로 문화예술노동연대와 함께

[부산]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기획강좌 2강 개최

3월의 마지막 일인 31일(목) 저녁 7시에 부산지역에서

[부산]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기획강좌 2강 개최 3월의 마지막 일인 31일(목) 저녁 7시에 부산지역에서

[부산]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기획강좌 1강

3월 24일(목) 저녁 7시 민주노동 부산본부에서 '중대재해'

[부산]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기획강좌 1강 3월 24일(목) 저녁 7시 민주노동 부산본부에서 '중대재해'

감사합니다



한노보연 후원하기

한노보연의 활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한노보연 SNS

한노보연의 소식을 다양한 채널로 만나세요.